

第106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閉會中)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12月1日(金) 10時37分

場 所 運營委員會室

議事日程

1. 第107回 鐘路區議會 定例會 議事日程 協議의 件

審査된案件

1. 第107回 鐘路區議會 定例會 議事日程 協議의 件 2面

(10時37分 開議)

○委員長 洪起瑞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2000년 첫해를 맞이한 지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를 점검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정례회가 오늘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며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동안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동료 의원 서로간에 화합하고 선진의회 위상제고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되나 본인의 역할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주주의 의회답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간에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종전 정기회의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가 연초에 개정된 관련법규와 조례에 따라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정례회의시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12월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는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시기적으로나마 효율적인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の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0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

례회 개의시와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起瑞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1. 第107回 鐘路區議會 定例會 開議時 協議의件

(10時40分)

○委員長 洪起瑞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와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2000년도 제2차 제107회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개최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07회 정례회의는 2000년 12월 1일 개최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심의하고 집행부 2001년도 예산(안) 상정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 이후 주요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12월 11일은 접수된 현안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며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은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2000년 12월 16일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한 16일간의 회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이 작성 협의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2000년 2차 정례회의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일정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委員長 洪起瑞 그것은 금년에 1차 정례회 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예산심의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千相旭委員 1차도 할 수 있고 2차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요구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할 수 가 있거든요. 정례회인데 감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委員長 洪起瑞 법상에 그것은 해야 되면 우리가 1년에 감사는 7일 이내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1차 정례회 때 7일간을 써 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9分 會議中止)

(10時56分 繼續開議)

○委員長 洪起瑞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요청한 제1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照)

第107回 鐘路區議會 定例會 議事日程(案)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洪起瑞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종로구의회 임시
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7分 散會)

○出席委員 7人

洪起瑞 鄭泰淳 千相旭 安載弘
金福同 李東奎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姜光日

